

[별표 2]

농작물의 품목별 · 재해별 · 시기별 손해 조사방법

1. 일반기준

- 가. 과수원의 나무조사는 품종 · 재배방식 · 수령별 실제결과(열매맺음)나무수, 고사나무수, 미보상나무수, 수확완료나무수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. 표본나무는 과수원의 조사대상나무수에 맞춰 [별표 2의2]에 따라 산정한다. 조사대상나무수는 실제결과 나무수에서 고사나무수, 미보상나무수 및 수확완료나무수, 수확불능나무수를 뺀 나무수를 의미한다.
- 나. 농지의 면적조사는 실제 경작면적, 고사면적,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, 기수확면적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. 표본구간은 농지의 조사대상면적에 맞춰 [별표 2의2]에 따라 산정한다. 조사대상면적은 실제 경작면적에서 고사면적, 타작물 및 미보상면적, 기수확면적을 뺀 면적을 의미한다.
- 다. 기타 조사방법에 따른 세부사항은 제16조에 따라 작성된 「손해평가업무방법서」와 보험약관에 따른다.

2. 개별기준

가. 특정위험방식 상품(인삼)

| 생육 시기 | 재해 | 조사내용 | 조사시기 | 조사방법 | 비고 |
|-------|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|----|
| 보험 기간 | 태풍(강풍) · 폭설 · 집중호우 · 침수 · 화재 · 우박 · 냉해 · 폭염 | 수확량 조사 |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|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감소된 수확량 조사 · 조사방법: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| |

나. 적과(열매 숙아 내기)전종합위험방식 상품(사과, 배, 단감, 뽕은감)

| 생육 시기 | 재해 | 조사내용 | 조사시기 | 조사방법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험계약 체결일 ~ 적과 전 | 보상하는 재해 전부 | 피해사실 확인 조사 |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|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여부 조사 | 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생략 가능 |
| | 우박 | |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| 우박으로 인한 유과(어린과실) 및 꽃(눈)등의 타박비율 조사 · 조사방법: 표본조사 | |
| 6월1일 ~ 적과전 | 태풍(강풍), 우박, 집중호우, 화재, 지진 | |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| 보상하는 재해로 발생한 낙엽피해 정도 조사 - 단감 · 뽕은감에 대해서만 실시 · 조사방법: 표본조사 |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 특약 가입건에 한함 |

| 생육 시기 | 재해 | 조사내용 | 조사시기 | 조사방법 | 비고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적과 후 | - | 적과 후 착과수 조사 | 적과 종료 후 | 해당 농지의 적과(열매 숙아 내기) 종료 후 총 착과 수를 조사 · 조사방법: 표본조사 |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 조사 |
| 적과후 ~ 수확기 종료 | 보상하는 재해 | 낙과피해 조사 |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| 재해로 인하여 떨어진 피해과실수 조사 - 낙과피해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 · 조사방법: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| 단감 · 뽕은감 |
| | 우박, 일소, 가을동상해 | 착과피해 조사 | 수확 직전 | 낙엽률 조사(우박 및 일소 제외) - 낙엽피해정도 조사 · 조사방법: 표본조사 | |
| 수확완료 후 ~ 보험종기 | 보상하는 재해 전부 | 고사나무 조사 | 수확완료 후 보험 종기 전 | 달려있는 과실 중 재해로 인한 피해과실수 조사 - 착과피해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 · 조사방법: 표본조사 | 수확완료 후 추가 고사나무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|
| | | | |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되거나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나무 수를 조사 - 특약 가입 농지만 해당 · 조사방법: 전수조사 | |

* 전수조사는 조사대상 목적물을 전부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, 표본조사는 손해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해보험사업자가 통계이론을 기초로 산정한 조사표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함.

다. 종합위험방식 상품(농업수입보장 포함)

① 해가림시설 · 비가림시설 및 원예시설

| 생육시기 | 재해 | 조사내용 | 조사시기 | 조사방법 | 비고 |
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|
| 보험기간 내 | 보상하는 재해 전부 | 해가림시설 조사 |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|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시설 조사 · 조사방법: 전수조사 | 인삼 |
| | | 비가림시설 조사 | | | |
| | | 시설 조사 | | | 원예시설, 버섯재배사 |

② 수확감소보장 · 과실손해보장 및 농업수입보장

| 생육시기 | 재해 | 조사내용 | 조사시기 | 조사방법 | 비고 |
|------|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|
|------|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|

| 생육 시기 | 재해 | 조사내용 | 조사시기 | 조사방법 | 비고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수확 전 | 보상하는 재해 전부 | 피해사실 확인 조사 |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|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조사 (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생략 가능) | |
| | | 이양(직파) 불능피해 조사 | 이양 한계일 (7.31)이후 | 이양(직파)불능 상태 및 통상적인 영농활동 실시여부조사 | 벼만 해당 |
| | | 재이양(재직파) 조사 |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|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이양(재직파)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| 벼만 해당 |
| | | 재파종 조사 |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|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파종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| 마늘(남도, 대서), 가을감자, 무(봄무, 가을무(일반 무),월동무 당근(고랭지 당근, 가을·월동 당근)만 해당 |
| | | 재정식 조사 |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|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정식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적비율 조사 | 양배추(가을양배추, 월동양배추), 단호박, 배추(봄배추, 가을배추, 월동배추), 양파만 해당 |
| | | 경작불능조사 |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| 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험목적인 식물체 피해율 조사 | 벼·밀, 밭작물(차(茶)제외),복분자만 해당 |
| | | 과실손해조사 | 수정완료 후 | 살아있는 결과모지수 조사 및 수정 불량(송이)피해율 조사 · 조사방법: 표본조사 | 복분자만 해당 |
| | | | 결실완료 후 | 결실수 조사 | 오디만 |

| 생육 시기 | 재해 | 조사내용 | 조사시기 | 조사방법 | 비고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|
| | | | | · 조사방법: 표본조사 | 해당 |
| | | 수확전 사고조사 |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| 표본주의 과실 구분 · 조사방법: 표본조사 | 감귤(온주 밀감류)만 해당 |
| 수확 직전 | - | 착과수조사 | 수확직전 | 해당농지의 최초 품종 수확 직전 총 착과 수를 조사 -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 조사 · 조사방법: 표본조사 | 포도, 복숭아, 자두, 감귤(만감류), 사과, 배, 단감, 뽕은감만 해당 |
| | 보상하는 재해 전부 | 수확량 조사 | 수확직전 |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량 조사 · 조사방법: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| |
| | | 과실손해조사 | 수확직전 | 사고발생 농지의 과실피해조사 · 조사방법: 표본조사 | 무화과, 감귤(온주 밀감류)만 해당 |
| 수확 시작 후 ~ 수확종료 | 보상하는 재해 전부 | 수확량조사 | 조사 가능일 | 사고발생농지의 수확량조사 · 조사방법: 표본조사 | 차(茶)만 해당 |
| | | |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| 사고발생 농지의 수확 중의 수확량 및 감수량의 확인을 통한 수확량 조사 · 조사방법: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| |
| | | 동상해 과실손해조사 |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| 표본주의 착과피해 조사 - 12월21일~익년 2월말일 사고 건에 한함 · 조사방법: 표본조사 | 감귤(온주 밀감류)만 해당 |
| | | 수확불능확인 조사 | 조사 가능일 | 사고발생 농지의 제현을 및 정상 출하 불가 확인 조사 · 조사방법: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| 벼만 해당 |
| | | 낙과피해 조사 |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| 재해로 인하여 떨어진 피해과실수 조사 - 낙과피해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 · 조사방법: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| 사과·배·단감·뽕은감 |
| | | 착과피해 조사 | 수확 직전 | 달려있는 과실 중 재해로 인한 피해과실수 조사 - 착과피해조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과실피해분류기준에 따라 구분 하여 조사 | 사과·배·단감·뽕은감 |

| 생육 시기 | 재해 | 조사내용 | 조사시기 | 조사방법 | 비고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| | · 조사방법: 표본조사 | |
| | 태풍(강풍), 우박 | 과실손해조사 |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| 전체 열매수(전체 개화수) 및 수확 가능 열매수 조사 - 6월1일~6월20일 사고 건에 한함 · 조사방법: 표본조사 | 복분자만 해당 |
| | | | | 표본주의 고사 및 정상 결과지수 조사 · 조사방법: 표본조사 | 무화과만 해당 |
| 수확완료 후 ~ 보험종기 | 보상하는 재해 전부 | 고사나무 조사 | 수확완료 후 보험종기 전 |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되거나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나무 수를 조사 - 특약 가입 농지만 해당 · 조사방법: 전수조사 | 수확완료 후 추가 고사나무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|

* 재해보험사업자는 「농업재해보험 보험목적물별 보상하는 병충해 및 질병규정」에서 정한 병충해 및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손해평가를 위해 당해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

③ 생산비 보장

| 생육 시기 | 재해 | 조사내용 | 조사시기 | 조사방법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--|
| 정식 (파종) ~ 수확 종료 | 보상하는 재해 전부 | 생산비 피해조사 | 사고발생시 마다 | ① 재배일정 확인 ② 경과비율 산출 ③ 피해율 산정 ④ 병충해 등급별 인정비율 확인 (노지 고추만 해당) | |
| 수확전 | 보상하는 재해 전부 | 피해사실 확인 조사 |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|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조사 (피해사실이 명백한 경우 생략 가능) | 메밀, 고추, 시금치, 양상추, 배추 (고랭지배추) , 파, 무(고랭지무) , 가을무(단 무지무, 알타리무) , 브로콜리, 노지오이 만 해당 |
| | | 재파종 조사 |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|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파종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 적비율 조사 * 무(고랭지무, 가을무(단무지무, 알타리무)), 쪽파, 시금치, 메밀 만 해당 | |
| | | 재정식 조사 |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| 해당농지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하여 재정식이 필요한 면적 또는 면 적비율 조사 * 고추, 배추(고랭지배추) 브로콜 리, 양상추, 노지오이만 해당 | |
| | | 경작불능조사 |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| 해당 농지의 피해면적비율 또는 보 험목적인 식물체 피해를 조사 | |
| 수확 직전 | | 생산비 피해조사 | 수확직전 | 사고발생 농지의 피해비율 및 손 해정도 비율 확인을 통한 피해를 조사 · 조사방법: 표본조사 | |